

2021년도  
역촌동 주민자치회  
자 치 계 획  
결과보고서







2021년도  
역촌동 주민자치회  
자 치 계 획  
결과보고서





## 인사말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장 신재교 \_ 04

역촌동 동장 김현중 \_ 05

## 2021 역촌동 주민자치회 일반개요

01 역촌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_ 07

02 역촌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_ 08

03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_ 09

2021 역촌동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 돌아보기~ \_ 10

## 2021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 및 회계현황

04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_ 13

05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자료 \_ 18

## 2021 역촌동 주민자치회 사업별 보고

### | 은평구 동 참여예산 활동 사업 |

01 찾아가는 봉사단 역촌 노노케어 \_ 25

### | 서울시 참여예산 활동 사업 |

02 내 손안에 들어온 세상 \_ 26

03 어깨동무 \_ 27

04 우리동네 이웃장터 \_ 28

### | 주민세균등분 주민 활동 사업 |

05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배우고, 나누고 \_ 29

06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_ 30

07 전통장과 발효음식의 끝판왕 \_ 31

08 역촌동 주민 토탈솔루션 \_ 32

- 09 주민자치회 활동기록 게시판 및 영상제작 \_ 33
- 10 환경안전 대화모임과 남자들의 공동부엌 \_ 34
- 11 엄마 나라 이야기꾼 양성과정 \_ 35
- 12 역촌 할배, 할매 당신이 반짝이는 순간 \_ 36
- 13 청소년·청년 홍보단 유-케이터 \_ 37
- 14 마을 의제 개발 <주민총회> \_ 38
- 주민총회 결과보고 \_ 39

**2021 역촌동 주민자치회 활동 소감 \_ 53**

**별첨자료**

- 별첨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_ 61
- 별첨2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_ 68





## 2021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참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하게도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 70% 이상의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 애쓰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과 잦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zoom으로 정기회의와 운영진 회의 대부분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줄어서, 조금 김이 빠졌다고 할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주민자치 회장이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동안 저 역시 주민으로 엄청난 성장의 시간이었고, 위원님들도 올 한 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성장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다음 해 사업을 고민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사업 홍보, 주민투표, 사업선정하는 주민총회 과정이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주민자치회나 마을 일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시각과 달리 주민자치회가 재평가 받는다는 의미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더 활성화 되도록 역촌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역할과 참여, 노력이 더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역촌동 주민자치 회장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업실행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시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더 많은 주민들이 더 혜택받는 역촌동 주민자치회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장 신재교



## 참여를 통한 변화, 2022년에도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동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전히 힘든 시기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기운 잃지 마시고 소중한 일상 행복하게 꾸려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2기 주민자치회 출범 첫해였던 금년 한 해,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발전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참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마을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도 잘 마무리해 주셨고  
지난해 이월된 4개 사업을 포함해 총 9개의 주민세 환원사업과  
역촌동만의 특화된 노노케어 사업을 포함한 4개의 참여예산사업 등  
모두 13개의 사업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돼 화상회의를 통한 의사소통과  
분과 단위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의견을 모으며 하나하나 추진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까지  
헌신해 주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역촌동 주민 여러분! 참여가 변화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주민자치회 사업에 애정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 보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살기 좋은 역촌동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모두 건강하시고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역촌동 동장 김현중



2021  
역촌동 주민자치회  
일반  
개요

# 역촌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자치회관 교육분과	복지분과	환경과 자원분과	다문화 참여예산분과	청소년, 청년분과	홍보 분과
<b>우리손으로 만들고 배우고 나누고</b>	<b>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b>	<b>주민을 위한 로탈 솔루션</b>	<b>엄마나라 이야기꾼 양성과정</b>	<b>청소년 청년 홍보단 유케이터</b>	<b>우리동네 이웃장터 (시참)</b>
김윤진(리더) 강정순 김명화 김은아 비안바 도우람	장여선(리더) 백승자 권성연 천경순	정영숙(리더) 김인선 한예순 정재영 이호미	홍청자(리더) 이양수 이경순 김태희 김태숙	홍상만(리더) 김정수 이환희 강동희 김기웅	엄기인(리더) 김수연 이진용 이승분 세이노 히토미
<b>어깨동무 (시참)</b>	<b>전통장과 효소 발효의 끝판왕</b>	<b>남자들의 공동부역</b>	<b>할배, 할매 당신이 반짝이는 순간</b>	<b>내손안에 들어온 세상 (시참)</b>	<b>주민자치회 활동취재 및 영상보전</b>
주희연(리더) 김인순 오흥덕 오수복 이덕력	마천숙(리더) 김형자 황연하 차화석 김은숙	연순이(리더) 조정현 이봉흠 송천식 신재교	전혜정(리더) 박상현 김정란 신태진 박주호	김미정(리더) 서지영 이형자 김태자 서영옥	손지영(리더) 이민선 윤경학 신경숙

# 역촌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기반으로 개선하고 싶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촌동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 ▣ 주민자치회 위원 : 58명 (2021. 12.21. 기준)

(단위: 명)

계	성 별		연 령 별		단체, 개인별	
	남	여	40대 이하	40대 이상	단체	개인
58	18	40	13	45	23	35

## ▣ 주민자치회 임원진 현황 (2021. 12.21. 기준)

회 장	부회장	감 사	간 사	분 과 장 (사업리더)	동자치 지원관
신재교	신경숙	이형자	이호미	김윤진, 김미정, 마천숙, 연순이 주희언, 장여선, 엄기인, 손지영 전혜정, 정영숙, 홍상만, 홍청자	정재은

## ▣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현황 (2021. 12.21. 기준)

분과명	사업리더	위 원	분과원	주요업무
자치회관 교육분과	김윤진 주희언	강정순, 김명화, 김은아, 비안바도우람, 김인순, 오흥덕, 오수복, 이덕력	조판순, 황춘자, 박현희, 신미재, 민정복, 김성자, 조경숙, 유옥례	자치회관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마을문화예술 활동
복지분과	장여선 마천숙	권성연, 백승자, 천경순, 김형자, 황연하, 차화석, 김은숙		어르신과 취약계층 돌봄 활동
환경과 자원분과	정영숙 연순이	김인선, 한예순, 정재영, 이호미 조정현, 이봉흠, 송천식, 신재교		지역내 자원조사를 통해 지역환경개선 활동
다문화 참여예산분과	홍청자 전혜정	이양수, 이경순, 김태희, 김태숙 박상현, 김정란, 신태진, 박주호	우영희	다문화 이웃들의 지역 활동 및 참여기회 제공
청소년, 청년분과	홍상만 김미정	김정수, 이환희, 강동희, 김기웅 서지영, 이형자, 김태자, 서영욱	최준호	청소년, 청년이 지역의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
홍보분과	엄기인 손지영	김수연, 이진용, 이승분, 세이노히토미, 이민선, 윤경학, 신경숙		주민자치회 홍보활동

#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 2021.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마무리 및 2021년 사업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사업정산 및 마무리 / 감사실시</li> <li>- 2021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li> <li>- 역촌동 2기 주민자치위원 모집</li> </ul>
○ 2021. 0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촌동 2기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월 09일 : 위원선정관리위원회 2차 회의</li> <li>- 02월 18일 : 공개추첨식 발표 및 2기 구성</li> <li>- 02월 23일 : 임원선출 선관위 모집공고</li> <li>- 03월 08일 : 임원선출</li> <li>- 03월 16일 : 역촌동 2기 정기회의</li> </ul>
○ 2021. 0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사업 14개 활동시작</li> <li>• 역촌동 2기 운영세칙개정</li> <li>• 마을의제발굴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역촌동 주민활동 사업 14개 진행 시작</li> <li>- 04월 20일 : 정기회의 실시 및 운영세칙 개정안 최종승인</li> <li>- 04월 27일 : 분과원 모집</li> <li>- 05월 11일 : 운영진 역량강화 워크숍</li> <li>- 05월 24일 : 마을의제발굴</li> </ul>
○ 2021.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총회 사전투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월 07일 : 주민총회 공고문 개시</li> <li>- 06월 08일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li> <li>- 06월 : 역촌동 주민총회 준비 (비대면 실시로 총회준비과정 사전영상준비)</li> </ul>
○ 2021.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총회 실시</li> <li>• 각 분과사업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월 06일 : 주민총회 사전투표 결과 집계</li> <li>- 07월 15일(목) 오전 11시 주민총회 결과발표 (비대면 사전녹화영상 유튜브 송출)</li> <li>- 각 분과사업 진행</li> </ul>
○ 2021.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관 동네배움터 사업진행</li> <li>• 총회결과 게시판 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월 09일 : 평생학습관 동네배움터 사업 주민자치회 실시</li> <li>- 주민총회 선정 사업 사업제안서 제출</li> </ul>
○ 2021.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활동 사업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07일 : 은평구 조례개정안 공문 공유</li> <li>- 9월 28일 : 정기회의 실시 및 사업진행상황 공유</li> </ul>
○ 202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 사업 진행</li> <li>• 동축제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촌동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li> <li>- 역촌동 (동)축제 홍보 및 실시 (비대면 복면가왕)</li> </ul>
○ 202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 사업 진행</li> <li>• 각 사업 중간점검 실시</li> <li>• 역량강화 워크숍진행</li> <li>• 동축제영상 송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자치안전과 중간정산 자료 정리</li> <li>- 각 14개 분과사업 중간점검 및 진행 여부 파악</li> <li>- 11월 11일 : 다문화분과 이주 여성 DMZ 문화탐방</li> <li>- 11월 19일 : 15시 30분 동축제 영상 유튜브 송출</li> </ul>
○ 202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12월 21일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li> <li>- 각 분과사업 마무리</li> <li>- 2기 주민자치위원 정리 및 결원발생 위원 추가모집준비</li> </ul>

# 2021

## 역촌동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 돌아보기~



| 운영진 회의 |



| 상반기 감사 |



| 2기 모집 포스터 |



|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 |



| 2기 구성위원선정관리위원회 회의 |



| 2기 선정 공개추첨식 |



| 2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



| 2기 임원 구성 |



| 2기 위촉장 수여식 정기회의 |



| 운영세칙 개정준비 사무국 회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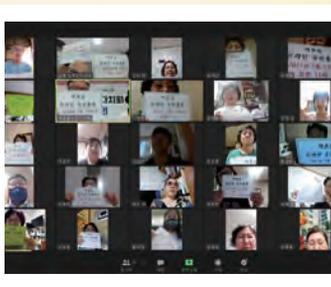
| 마을의제발굴 2차 회의 |



| 마을의제발굴 위한 마을돌아보기 |



| 주민총회 준비위 및 운영진회의 |



| 주민총회 슬로건 정기회의 |



| 주민총회 사전투표 |



| 주민총회 사전투표 개표 |



| 역촌동 주민총회 |



| 평생학습관(동네배움터)협약식 |



| 노노케어 |



| 노노케어 활동 |



| 운영진 워크숍 |



| 커피박 업사이클링 체험 |



| 마을공동체 한마당 참여 |



| 다문화 이웃과 DMZ탐방 |



2021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 및  
회계현황

#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 감사 개요

근 거 :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3장 재정 및 예산관리, 제37조(사업비 관리), 제38조(재정), 제39조(특별회비), 제40조(회계 및 지출), 제41조(회계연도)에 근거함.

감사일시 : 2021. 6. 28. (월) / 오후 6시30분  
※ 특이사항 : 7월 15일 주민총회 실시로 일정보다 앞당겨 실시함

감사장소 :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 회의실

감 사 : 이형자, 안상기

참 석 자 : 회장 신재교, 부회장 신경숙, 간사 이효미

업무협조 : 담당 행정 주무관 김영남, 동자치지원관 정재은

## 감사 내용

###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월1회, 셋째주 화)	2021년 1월~6월 중 : - 1기 정기회의 - 1월, 2월(2회 개회) - 2기 정기회의 - 3월, 4월, 5월, 6월 (4회 개회)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불가로 단톡을 이용한 사전안건 동의 및 회의 자료공유 후 정기회의는 zoom화상회의 진행.
2	운영진회의 (월1회, 둘째주 화)	2021년 1월~6월 중 : - 1기 임원회의 - 1월, 2월(2회 개회) - 2기 운영진회의 - 3월, 4월, 5월, 6월 (4회 개회) 정기회의 전 사전 임원진회의를 통해 정기회의 의결 사항 선정 및 공유 사업 활동을 공유하는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함.
3	12사업 리더회의, 민관협력회의 (월1회 이상)	- 1기 분과회의-2021년 1월, 2월(2회 개회) - 2기 12개사업 리더회의 - 3월, 4월, 5월, 6월(4회 개회) 자치실행에 필요한 사업을 분과별로 수시로 진행하면서 거리두기를 염두 하여, 소규모 모임으로 진행하여 사업 활성화와 효율성에 기여함.
4	사무국 회의 민관실무회의 (필요시 상시진행)	- 사무국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 운영되었으며 민관실무회의는 주 1회 정상 적 진행으로 운영진회의 및 정기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데 역할하였음
5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 주요내용: 2022년 마을의제선정 - 대면 및 비대면 : 회의 4회 진행 (단톡회의 포함) - 참여인원 : 19명 - 역촌동 2022년 마을의제발굴, 주민총회 의제선정, 주민총회 준비
6	자치회관 운영	- 하반기 개관 중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함

## 2. 주민자치회 예결산 및 회계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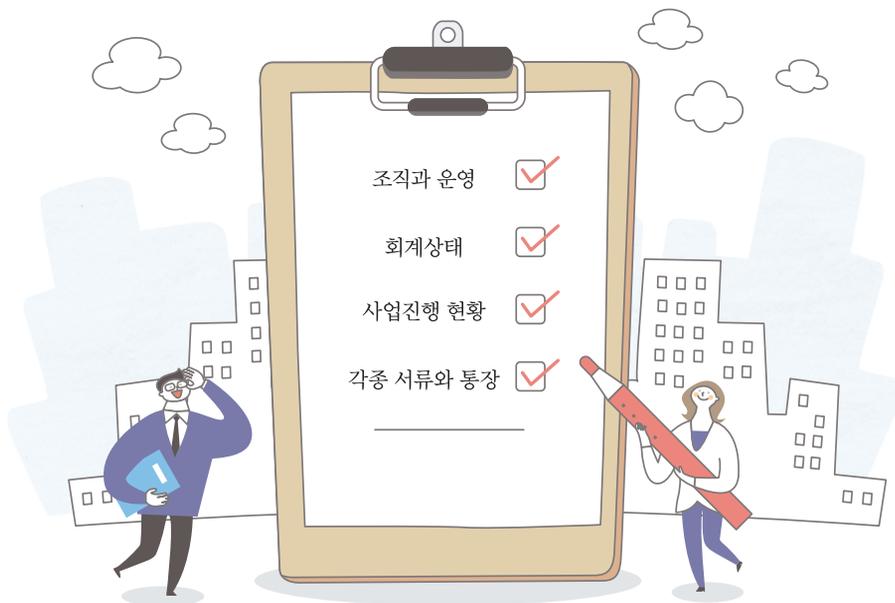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적 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집행여부 확인
2	지출서류(결의서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적 정
3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적 정
4	회계장부 비치 및 서류	적 정
5	근무시간에 따른 간사활동비 지급의 여부 (기타소득세 납부여부)	적 정

## 3. 주민자치회 주민활동사업(주민세, 참여예산) 진행 현황 점검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2기 주민자치회 O.T 워크숍	2월 23일: 7회 실시 (코로나19로 소수로 나누어 진행)
2	운영진 리더교육 워크숍	5월 11일 : 토정골사랑방 진행
3	우수사례지 지역탐방 방문교류 선진지 견학	코로나19로 진행 불가
4	(구)참여예산 : 찾아가는 역촌 노노케어	6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5회 진행
5	(시)참여예산 : 우리동네 이웃장터	상반기 회의 진행 7월 사업실시 예정
6	(시)참여예산 : 어깨동무	바리스타 5회, 걷기대회 6회 실시
7	(시)참여예산 : 내 손안에 들어온 세상	키오스크 사용법 6회 실시
8	우리손으로 만들고 배우고 나누고	역사탐방 5회, 정리수납 1회 진행
9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5월 둘째주부터 매주 진행 중
10	전통장과 효소발효의 끝판왕	장담그기 완료 김장김치 나눔, 유자청 나눔 (하반기 진행)
11	역촌동 주민토탈 솔루션	이미용 5회, 탁구교실 4회 실시
12	주민자치회 활동기록 게시판 및 영상제작	하반기 실시 (사업진행 결과 영상제작 예정)
13	의제개발비(마을의제 발굴 및 주민총회)	총회준비위원회 4회 실시/진행 중
14	역촌 할배 할매 당신이 반짝이는 순간	코로나 상황으로 보류
15	엄마나라 이야기꾼 양성과정	마술교실 6회 진행, 다문화 소식지 제작 진행 중
16	환경안전 대화 모임과 남자의 공동부엌	5월부터 4회 진행
17	청소년 청년 홍보단 유 케이터	상반기 회의 진행, 7월 사업 실시 예정

## 4. 주민자치회 서류감사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 집행자금 모두 통장계좌 입금 - 지출성 경비는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확인
2	주민자치회 명의의 전용통장 개설 및 사용 여부	우리은행 응암동지점 개설
3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목적 외로 임의사용 사항 없음
4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일치함
5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간사 가입 확인
6	지출서류(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미비서류 시정 요청
7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	- 소득세 : 국세청 납부 - 지방세 : 서울시 납부
8	근무시간에 따른 간사활동비 지급의 여부 (기타소득세 납부여부)	- '간사 활동 기록부' 확인 - 근무시간에 따라 월 100만원 정당지급
9	세무서 고유번호증 보관관리	비치 有
10	직인의 보관관리	비치 有
11	주민자치회 통장 관리	비치 有
12	주민자치회 위·해촉 사임 대장	비치 有
13	연 1회 재물조사 실시 여부, 조사표 부착 여부	상반기 변화 없음 하반기 실시 예정
14	자치회관 수입 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누락 계상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코로나19로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미실시로 환불진행 중
15	2기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비통장	은평신용협동조합 응암역지점 개설



## 5. 서울형 주민자치회 회계서류 17개 확인 (시범 5개동 공통서류)

연 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2	정기회의 안건지 및 회의록	○
3	지출결의서	○
4	총계정원장	○
5	주민세균등분 9개 사업회의록	○
6	감사보고서	○
7	운영진회의록 및 안건지	○
8	민관협력 회의록 및 안건지	○
9	비품대장	○
10	주민자치위원 명부	○
11	간사활동 일지	○
12	직인사용 대장	○
13	법 령	2기 운영세칙 확인 (○)
14	주민총회관련 서류	상반기 미실시
15	수발신 문서철	○
16	내부 문서철	○
17	업무 인수인계서	○



## 6. 감사총평

### ▶ 감사 안상기의 총평

주민자치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 아니라 권리능력이 없는 봉사단체입니다. 운영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있으나, 보조금에 관한 권한은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분 환원보조금 예산사업에 한하며, 기타 구·동 참여예산사업은 행정에 귀속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의 감사는 주민자치회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과 자치회관 기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와 내용은 주민자치회와 동 주민센터의 협조와 소통을 통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서류상 위법부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 ▶ 감사 이형자의 총평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했으나 방역을 준수하면서 13개 사업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배할매 당신이 반짝이는 순간’, ‘청소년·청년 홍보단 유-케이터’, ‘우리동네 이웃장터’ 사업은 하반기 때 활발히 활동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 안상기 (서명 생략)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 이형자 (서명 생략)

은 평 구 청 장 귀 중

# 역촌동 주민자치회

## 회계현황 자료

### 1. 운영비 (사업비, 간사활동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개요	추진결과
기본경비(구비) <b>5,000</b> 천 원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내용 : 운영비/업무추진비</li> <li>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3층</li> <li>실행주체 : 역촌동 주민자치회</li> </ul>	- 상반기 250만원 입금 잔여금 250만원은 하반기 7월 중 입금예정
사업비(시비) <b>6,800</b> 천 원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내용 : 행사운영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li> <li>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3층</li> <li>실행주체 : 역촌동 주민자치회</li> </ul>	- 2020년 이월금, 2021. 1. 13. 교부
간사활동비 <b>12,000</b> 천 원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내용 : 간사활동비</li> <li>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3층</li> <li>실행주체 : 역촌동 주민자치회</li> </ul>	- 상반기 600만원 교부 잔여금 600만원은 하반기 7월 중 입금예정

### 2. 실행사업 (사구 단위 참여예산)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개요	추진결과
(구)노노케어 <b>50,000</b> 천 원	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내용 : 밑반찬 나눔</li> <li>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3층</li> <li>실행주체 : 주민자치위원 및 봉사자</li> </ul>	5월부터 매주 화요일 5회 실시
(서울시) 우리동네 이웃장터 <b>5,469</b> 천 원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내용 : 아나바다 장터</li> <li>장 소 : 역촌동 인근지역</li> <li>실행주체 : 홍보분과</li> </ul>	코로나로 인해 연기 하반기 실시예정
(서울시) 어깨동무 <b>10,000</b> 천 원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내용 : 이웃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li> <li>장 소 : 역촌동 인근지역</li> <li>실행주체 : 자치회관교육분과</li> </ul>	동네한바퀴, 바리스타교실, 플랜트 수업 실시 6회
(서울시) 내 손안에 들어온 세상 <b>10,000</b> 천 원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내용 : 키오스크 스마트폰교육</li> <li>장 소 : 토정골 사랑방</li> <li>실행주체 : 청소년·청년분과</li> </ul>	토정골사랑방에서 6회 교육 실시 중

### 3. 주민활동 실행사업 (주민세 균등분) / 이월사업 포함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개요	추진결과
우리손으로 만들고 배우고 나누고 <b>16,000</b> 천 원	3~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발굴 후 강의개설 시행</li> <li>● 장 소 : 역촌동 관내지역</li> <li>● 실행주체 : 자치회관 교육분과</li> </ul>	역사탐방 5회 실시 정리수납 3회 실시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b>14,500</b> 천 원	3~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독거노인 안부전화</li> <li>● 장 소 : 역촌동 관내</li> <li>● 실행주체 : 복지분과</li> </ul>	5월~11월 실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안부전화 실시
전통장과 효소발효의 끝판왕 <b>13,500</b> 천 원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전통 된장, 간장 나눔</li> <li>●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옥상</li> <li>● 실행주체 : 복지분과</li> </ul>	4월 장 구입, 5~6월 숙성 10월 된장, 간장 나눔. 12월 김장김치/유자청 나눔
역촌동 주민 토탈 솔루션 <b>11,500</b> 천 원	3~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이웃과 함께 프로그램</li> <li>● 실행주체 : 역촌동 관내</li> <li>● 실행주체 : 환경과 자원분과</li> </ul>	매주 1회 이미용 봉사, 탁구교실 4회 실시
주민자치회 활동기록 게시판 및 영상제작 <b>3,491</b> 천 원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활동 기록</li> <li>● 장 소 : 역촌동 관내지역</li> <li>● 실행주체 : 홍보분과</li> </ul>	성과공유회 기록영상 제작
역촌 할배 할매 당신이 반짝이는 순간 <b>3,491</b> 천 원	3~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노인들의 이야기 정리</li> <li>● 장 소 : 역촌동 관내</li> <li>● 실행주체 : 다문화 참여예산분과</li> </ul>	노인들 자서전 등 생애 구술사 7월부터 교육 실시 자서전 만들기
환경안전 대화 모임과 남자의 공동부엌 <b>7,000</b> 천 원	3~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환경문제와 안전한 먹거리로 밀반찬 만들기</li> <li>● 장 소 : 역촌동 주민자치회 3층</li> <li>● 실행주체 : 환경과 자원분과</li> </ul>	중장년층 남자들과 이야기 나누며 음식 만들어 나눔
엄마나라 이야기꾼 양성과정 <b>15,765</b> 천 원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다문화 가정의 언어소통을 위한 프로그램</li> <li>● 장 소 : 토정골 사랑방</li> <li>● 실행주체 : 다문화 참여예산분과</li> </ul>	다문화소식지 제작 미술사자격과정 수업 역사탐방 철원DMZ 방문
청소년·청년 홍보단 유케이터 <b>7,000</b> 천 원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청소년청년 지역의제 발굴을 위한 모임</li> <li>● 장 소 : 역촌동 주민자치회</li> <li>● 실행주체 : 청소년·청년분과</li> </ul>	여름방학부터 영상제작 관련 zoom화상 강의 실시
의제개발비 <b>20,000</b> 천 원	3~8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2022년 마을의제발굴 및 주민총회 실시</li> <li>● 장 소 : 역촌동</li> <li>● 실행주체 : 역촌동주민자치회</li> </ul>	마을의제 발굴 및 선정, 주민총회 준비 성과공유회 실시

#### 4. 보조금 2021년 예산

총 예산		총 214,937천원 (시비 : 147,937천원, 구비 : 67,000천원, 자부담 : 0천원)				
구 분	주요내용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지원금		자부담	
			시비	구비		
	시범사업 동 사업비 총계	11,800	6,800	5,000	-	
주민 자치회 시범 사업	운영비 (구비)	사무관리비	1,920		1,920	
		행사운영비	1,100		1,100	
		공공운영비	480		480	
		업무추진비	1,500		1,500	
	사업비 (시비)	주민자치 회의 운영/행사운영비	2,060	2,060		
		주민자치 계획 수립/행사운영비	2,700	2,700		
		업무추진비	1,540	1,540		
		행사실비보전금	500	500		
		간사활동지원비 총계	12,000		12,000	
		주민세 및 시·구참여예산 총계/이월포함	191,137	141,137	50,000	
예산 편성 내역	주민세 균등분	21년 사업	의제개발비 및 주민총회	20,000	20,000	
			우리손으로 만들고, 배우고, 나누고	16,000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14,500		
			전통장과 효소발효의 끝판왕	13,500		
			역촌동 주민토탈출루션	11,500		
		주민자치회 활동기록 영상제작	3,491	95,668		
	20년 이월 사업	역촌할배할매 당신이 반짝이는 순간	6,912			
		엄마나라 이야기꾼 양성과정	15,765			
		환경안전 대화,남자의 공동부역	7,000			
		청소년,청년 홍보단 유케이터	7,000			
	(시)참여	시참여	내 손안에 들어온 세상	10,000	10,000	
			어깨동무	10,000	10,000	
			우리동네 이웃장터	5,469	5,469	
(구)참여	구참여	찾아가는 노노케어	50,000		50,000	
<b>합 계</b>		<b>214,937</b>	<b>147,937</b>	<b>67,000</b>		

## 5. 보조금 2021년 예산내용

### [1] 주민자치회 사업운영비 집행현황 (12월 27일 기준)

(단위: 원)

연번	교부일 : 2021. 2. 00.			집행내역			잔액
	사업명	예산액		1~9월	10월	12월 27일	
	<b>총 계</b>	경상	<b>23,800,000</b>	<b>14,052,670</b>	<b>1,179,580</b>	<b>5,400,540</b>	<b>3,167,210</b>
1	운영비 (구비)	경상	5,000,000	3,041,570	51,580	1,368,200	538,650
2	사업비 (시비)	경상	6,800,000	2,099,100	48,000	3,024,340	1,628,560
3	간사활동비 (구비)	경상	12,000,000	8,912,000	1,080,000	1,008,000	1,000,000

### [2] 2021년 자치활동(주민세균등분) 집행현황 (12월 27일 기준)

(단위: 원)

연번	교부일 : 2021. 3. 16.			집행내역			잔액
	사업명	예산액		1~9월	10월	12월 27일	
	<b>총 계</b>	총계	<b>78,991,000</b>	<b>37,820,780</b>	<b>8,972,070</b>	<b>17,277,790</b>	<b>14,920,360</b>
		경상	<b>76,991,000</b>	<b>37,820,780</b>	<b>8,972,070</b>	<b>15,639,890</b>	<b>14,558,260</b>
		자본	<b>2,000,000</b>	-	-	<b>1,637,900</b>	<b>362,100</b>
1	의제개발비 성과공유회	경상	20,000,000	10,068,900	-	4,356,000	5,575,100
2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배우고 나누고	경상	16,000,000	12,935,200	2,804,800	260,000	-
3	혼자지만 괜찮아	경상	14,500,000	9,015,850	3,791,150	1,693,000	-
4	전통장과 효소발효의 끝판왕	경상	13,500,000	3,939,750	2,328,120	7,232,130	-
5	역촌동 주민토탈 솔루션	경상	11,500,000	1,861,080	48,000	607,760	8,983,160
6	주민자치회 활동기록 게시판 및 영상제작	소계	<b>3,491,000</b>	-	-	<b>3,128,900</b>	<b>362,100</b>
		경상	1,491,000	-	-	1,491,000	-
		자본	2,000,000	-	-	1,637,900	362,100

[3] 2020년 이월사업 집행현황 (12월 27일 기준)

(단위: 원)

연 번	교부일 : 2021. 3. 16.		집행내역			잔 액	
	사업명	예산액	1~9월	10월	12월 27일		
총 계	총계	36,677,000	14,520,440	1,408,440	10,408,150	8,011,970	
	경상	26,627,000	8,933,280	220,440	8,651,700	6,762,020	
	자본	10,050,000	5,855,600	1,188,000	1,756,450	1,249,950	
7	환경안전 대화모임과 남자의 공동부엌	소계	7,000,000	4,377,210	-	2,356,000	266,790
		경상	3,990,000	1,367,210	-	2,35,6000	266,790
		자본	3,010,000	3,010,000	-	-	-
8	엄마나라 이야기꾼 양성과정	소계	15,765,000	5,592,820	1,315,000	6,336,700	2,520,480
		경상	13,765,000	5,592,820	127,000	6,336,700	1,708,480
		자본	2,000,000	-	1,188,000	-	812,000
9	역촌 할배·할매 당신이 반짝이는순간	소계	6,912,000	3,093,600	60,000	2,020,000	1,738,400
		경상	4,032,000	248,000	60,000	2,020,000	1,704,000
		자본	2,880,000	2,845,600	-	-	34,400
10	청소년 청년 홍보단 유-케어터	소계	7,000,000	1,691,810	33,440	1,788,450	3,486,300
		경상	4,840,000	1,691,810	33,440	32,000	3,082,750
		자본	2,160,000	-	-	1,756,450	403,550

[4] (시)참여예산, (구)참여예산 집행현황 (12월 27일 기준)

(단위: 원)

연 번	교부일 : 2021. 3. 16.		집행내역			잔 액
	사업명	예산액	1~9월	10월	12월 27일	
1	내 손안에 들어온 세상 (시)참	경상 10,000,000	5,428,500	2,063,000	96,000	2,412,500
2	어깨동무 (시)참	경상 10,000,000	5,272,600	1,172,000	3,084,000	471,400
3	우리동네 이웃장터 (시)참	경상 5,469,000	391,000	40,000	2,191,000	1,097,000
4	찾아가는 노노케어 (구)참	경상 50,000,000	13,674,990	1,668,720	12,483,290	22,173,000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인 여러분들과 관련 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촌동 주민자치회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항상 다양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2021년 보다 더 행복한 2022년을 위해  
역촌동 주민 여러분과 자영업자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21  
역촌동 주민자치회  
사업별  
보고

## 찾아가는 봉사단 역촌 노노케어

- 예산 + 5,000만원
- 진행 + 역촌동 주민자치회, 지역 65세 이상 주민봉사단
- 활동내역 + 역촌동 특성화 사업  
건강한 노인이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들에게 나눔



## 내 손안에 들어온 세상

- 예산 + 1,000만원
- 진행 + 김미정(리더), 김태자, 서지영, 서영옥, 이형자
- 활동내역 + 60대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화상회의, 예매, 은행업무 등)과 키오스크 활용법을 알려주는 사업

01. 키오스크 활용법 알기
02. 스마트폰 활용법 알기
03. Zoom 화상회의 알기



## 어깨동무

- 예산 + 1,000만원
- 진행 + 주희연(리더), 김인순, 오흥덕, 오수복, 이덕력
- 활동내역 + 비슷한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친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고 마을 봉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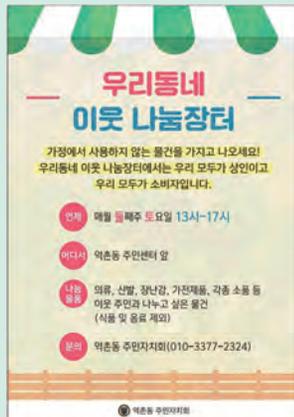
01. 건강걷기 요가
02. 바리스타 교육
03. 다육이 키우기 강좌 등



우리동네  
이웃장터

- 예산 + 546만원
- 진행 + 엄기인(리더), 김수연, 이진용, 이승분, 세이노히토미
- 활동내역 + 역촌동 주민대상 아나바다 베품장터 및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 운영

01. 신사종합복지관을 통해 기부물품 수합
02. 주민대상 홍보
03.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



##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배우고, 나누고

- 예산 + 1,600만원
- 진행 + 김윤진(리더), 강정순, 김명화, 김은아, 비안바도우람
- 활동내역 +
01. 역사탐방(이웃과 은평 알아보기!)
  02. 정리수납 자격증반 운영
  03. 건강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어린이 줌바댄스, 성인 실버댄스)
  04. 제과제빵 머핀 나눔 활동
  05. 뜨개질 목도리 나눔 활동
  06. 목공으로 연필꽂이 나눔 활동
  07. 실버 보드게임 자격증반 운영
  08. 팔찌 장신구 만들기 활동



##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 예산 + 1,450만원
- 진행 + 장여선(리더), 권성연, 백승자, 천경순
- 활동내역 + 01. 역촌동 노인인구 8천여 명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노인 발굴  
02. 독거 노인 대상 비상연락망 구축해 안부 전화  
03. 김 나눔, 비상식량 나눔 등 행사
- 우수사례 + 01. 쓰러지신 노인분 발견 후 가족과 119에 신고해 응급상황 대처  
02. 화재 상황에서 대처를 도와 신고 후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전통장과 발효음식의 끝판왕

예산 + 1,350만원

진행 + 마천숙(리더), 김은숙, 김형자, 차화석, 황연하

- 활동내역 +
01. 역촌동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지난 6년 동안 지속하여 진행
  02. 된장, 간장 등을 직접 담아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나눔 활동
  03. 김장김치 구매를 통해 독거 어르신들께 나눔 활동
  04. 유자청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께 나눔 활동



## 역촌동 주민 토탈솔루션

예산 + 1,150만원

진행 + 정영숙(리더), 김인선, 한예순, 정재영, 이효미

- 활동내역 +
01. 이미용 봉사 활동
    - 역촌동 관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꾸준한 이미용 봉사로 좋은 반응을 불러오고 있음
  02. 건강탁구 교실
    - 일상생활에서 탁구라는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



## 주민자치회 활동기록 게시판 및 영상제작

예산 + 349만원

진행 + 손지영(리더), 이민선, 윤경학, 안상기, 신경숙

활동내역 + 01. 역촌동 주민자치회 2021년 활동사항 홍보와 기록  
02. 주민총회 홍보 게시판 제작 및 설치  
03. 주민자치회 영상기록 게시판 설치  
04. 2021년 결과보고 영상 제작



## 환경안전 대화모임과 남자들의 공동부엌

예산 + 700만원

진행 + 연순이(리더), 조정현, 이봉흠, 송천식, 신재교

활동내역 +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이월 사업

01. 환경과 안전에 관한 주제로 중년 남성들의 대화
02. 간단한 요리를 배워보며 혼자서도 조리해 볼 수 있도록 함



# 엄마 나라 이야기꾼 양성과정

- 예산 + 1,600만원
- 진행 + 홍청자(리더), 이양수, 이경순, 김태희, 김태숙
- 활동내역 +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이월 사업

## 01. 다문화 정서 이해 함양

- 이주 여성들이 모국의 이야기로 만든 그림 동화와 문화를 학교와 지역 공동체 방문해 들려주는 사업

## 02. 다문화 소식지와 지역 유적지 소개 다국어 안내 팸플렛 발간

- 다문화 이웃의 사연들을 모은 <알록달록> 소식지 2회 발행

## 03. 마술동화구연 지도사 과정 수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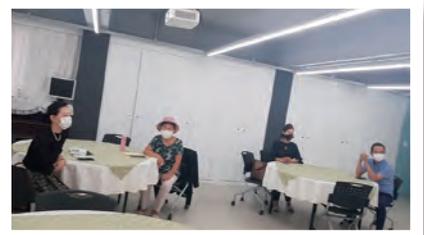
## 04. 다문화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역사/평화 탐방



## 역촌 할배, 할매 당신이 반짝이는 순간

- 예산 + 700만원
- 진행 + 전해정(리더), 김정란, 박상현, 박주호, 신태진
- 활동내역 +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이월 사업

01. 역촌동에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생애구술사가 기록하여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 마련
02. 코로나 상황으로 소수 정예의 신청을 받아 생애구술사 관련 수업 진행. 이후 노인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김



# 청소년청년 홍보단 유-게이터

예산 + 700만원

진행 + 홍상만(리더), 김정수, 이완희, 강동희, 김기웅

활동내역 +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이월 사업

01.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1인 크리에이터 세부 특강 진행
  - 영상기획, 작가, 스피치, 촬영과 편집 특강 진행
02. 지역 청소년 시설 홍보영상 제작
  - 역촌동 내 청소년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촬영 및 제작
03.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1인 크리에이터 체험



14

주민세균등분  
주민활동사업

## 마을 의제 개발 - 주민총회

예산 + 2,000만원

개요 + 역촌동 주민자치회 2022년 마을의제 개발 및 주민총회  
성과공유회 운영

활동내역 + 01. 마을 둘러보기  
02. 마을 의제 발굴(31건)  
03. 주민총회  
04. 사업시행 후 의제 발굴 위한 워크숍 운영  
05. 2021년 성과공유 및 사업결과 보고



# 주민총회 결과보고

## 총회준비위원회

### ▣ 2021년 5월 13, 14일 : 마을의제 발굴 마을돌러보기 2회 진행

- ▶ 1차 마을돌러보기 : 2021. 5. 13.(목) 14:00~16:00 (120분)
  - 참여자 : 역촌동 주민자치위원 13명
  - 개 요 : 역촌동 인근지역 마을을 둘러보며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장단점을 알아보며 마을의제가 될만한 아이디어 발굴

### ▣ 2021년 5월 20, 24, 27일 : 마을의제 발굴 워크숍 3회 진행

- ▶ 1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021. 5. 20.(목) 10:00~12:00 (120분)
  - 참여자 : 역촌동 주민자치위원 13명
  -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3층 사무실
  - 총회준비위원회 운영 : 신재교
  - 회의내용 : 마을돌러보기 후 마을의제 관련 논의
  
- ▶ 2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021. 5. 24.(월) 10:00~12:00 (120분)
  - 참여자 : 역촌동 주민자치위원 13명
  -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3층 사무실
  - 총회준비위원회 운영 : 신재교
  - 회의내용 : 총회준비 세부내역 논의
  
- ▶ 3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021. 5. 27.(목) 10:00~12:00 (120분)
  - 참여자 : 역촌동 주민자치위원 13명
  -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3층 사무실
  - 총회준비위원회 운영 : 신재교
  - 회의내용 : 총회 상정 마을의제 접수, 온라인 주민총회 방식 논의 및 세부일정 논의

## ▣ 2021년 6월 3일 : 마을의제 발굴 및 부서 검토 제출

- 제출의제안건 : 36개 중 실행가능성 제안의제 31개 제출

## ▣ 2021년 6월 8, 15일 :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 총회준비회의 : 2021. 6. 8.(목) 오전 10:30~12:00

- 참여자 : 민관협력회의 및 12명 운영진회의
-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3층 사무실
- 총회준비위원회 운영 : 신재교
- 회의내용 : 4차 총회준비위원회(=운영진회의) 안건내용 논의  
투표용지 및 투표방식

### ▶ 4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021. 6. 15.(화) 오후 18:30~

- 참여자 : 역촌동 주민자치위원 16명
-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2층 강좌실
- 총회준비위원회 운영 : 신재교
- 회의내용 : - 마을의제 부서검토 결과 공유 및 정기회의 안건 의제 논의  
- 주민총회 준비일정 공유 및 영상업제 공기 이동렬 선정  
- 영상사전녹화 제작에 따른 준비 일정 논의  
- 투표방법 및 사전투표 일정 논의  
- 주민총회예산 예상금액 공유



## ■ 2021. 6. 22.(화) : 역촌동 6월 정기회의

### ▶ 『주민총회 자치계획 마을의제발굴 부서검토 결과공유』

연번		2022년 마을의제	예산 소요예산	분야	기 타
01		쓰레기 정거장	1,500만원	환경 5개	쓰레기 분리배출
02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육	300만원		유치원 환경교육
03	1	미세먼지 안녕!	300만원		공기정화식물, 청정기
04		내 집앞 골목청소의 날	200만원		골목청소
05		나무사랑 내 사랑	300만원		봉산 청소 및 가꾸기
06	1	전통장 우리손으로 만들기(주민센터 옥상)	800만원	(비) 프로 그램 사업	전통된장, 발효음식
07	2	옥상텃밭 도시농업(토정골 사랑방 옥상) (중복사업 X)	300만원		텃밭 만들기
08	3	풍물 고전에 취하다(주민센터 지하) (중복 사업 장소 부재 X)	300만원		풍물교실
09	4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강사교체 조건)	500만원		독거노인, 장애인 이미용
10		언제나 청춘	300만원		노인 미용
11	1	건강한 밥상 프로젝트	700만원	프로 그램 사업	사찰음식 만들고 나눔
12	2	나도 할수 있다!	300만원		바리스타, 제빵 교실
13	3	역촌동 이웃과 추억만들기 사진전	700만원		동네 사진 전시회
14	4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	500만원		자서전쓰기
15	5	만들고 나누고	300만원		공예교실
16	6	함께하는 어깨동무(강사교체 조건)	300만원		노인대상 요가교실
17		아침체조 건강생활 누리기	500만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18	7	내 손안에 들어온 세상2	200만원		스마트폰 교육
19	8	정리수납과정 교육	500만원		자격증 및 봉사
20	9	우리동네 자전거수리 (장소부재 민원소지 X)	400만원		자전거수리
21	1	우리동네 배움터 사랑방 (토정골사랑방, 모두의 공간을 자치회관 배움터로 활용)	2,000만원	시참	토정골사랑방, 모두의 공간 : 교육 프로그램 진행
22	1	노노케어 (동)참여예산사업	5,000만원	구참	독거노인 반찬 나눔
23	2	역마을 어린이 공원 정비 (시설사업 X)	700만원		화장실, 울타리 정비
24	3	봉산 등산로 안내 지도판 설치 (시설사업 X)	1,000만원		봉산 안내
25	1	의제개발비(22년 주민총회 및 마을의제 발굴 워크숍,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공유회, 주민 총회 결과 및 성과보고 책자 제작비, 홍보 등)	1,500만원	주민세 균등분	운영비 2022년 주민총회, 성과공유회
0		인조별서유기버 역촌동 역사탐험대 (국가사업)	1,000만원	부적정 5건	문화유산 홍보,정비
		안심체육관 (민간 임대기간 부정확 등)	1억원		타당성 검토
		모두의공간정비 (민간시설로 임대기간 부정확)	2,000만원		공간시설정비
		문화가 있는 역촌동버스킹 (문화관광과 중복사업)	1,000만원		공연,주민소통
		반려동물은내친구 (가족정책과 중복사업)	800만원		반려동물 교육

※ 적정 사업 주민총회 투표 상정

(비)프로그램 사업 3개·프로그램 사업 8개·역촌동 동특성화 사업 3개

## ■ 사전투표

- 사전투표 기간 : 2021. 6. 24. ~ 7. 5. (12일간)
- 사전투표 작업
  - 거점 투표소 설치 : 주민센터, 응암역, 구산역, 역촌역 4군데 거점
  - 정족수 : 역촌동 2021년 5월 말 인구 45,987명 기준 0.5% 이상(230명)
  - 사전투표 목표 : 주민 1,500명 (3% 이상)
  - OMR용지 2,000장

### | 사전투표용지 확인 사항

제22조 ④항에 따라서 투표용지에 자치계획 동의 문구 정리

[예시1] 귀하는 위 주민총회에 상정된 자치계획 사업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업 실행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  비동의 >

[예시2] 귀하는 위 주민총회 결과를 문자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비동의 >

※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고, 사업들은 복수 선호도 투표로 진행



■ OMR 투표용지 시안

## 2022 역촌동 주민제안 마을의제선정 투표용지

(주민세 활동사업 약8천만원, (시)참여예산 2천만원, (동)참여예산 5천만원)

[ (비)프로그램성 사업 2개, 프로그램 사업 4개 / 총6개 투표 ]

연번	주민세 균등분	2022년 역촌동 마을사업	기표란 (●)채움
1	(비) 프로그램 사업 선호도 2개 선택	깨끗한 역촌! 우리가 만들어가요!! (쓰레기 정거장, 내 집앞 골목청소의 날, 봉산가꾸기, 미세먼지 안녕)	<input type="radio"/>
2		전통장 우리손으로 만들기 및 김장김치 나눔	<input type="radio"/>
3		언제나 청춘, 이미용 봉사 (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 이미용 봉사)	<input type="radio"/>
1	프로그램 사업 선호도 4개 선택	건강한 밥상 프로젝트 ( 사찰음식 만들고 나눔 )	<input type="radio"/>
2		나도 할수 있다! ( 바리스타, 제빵교실 )	<input type="radio"/>
3		역촌동 이웃과 추억만들기 사진전 (사진기술 익히기 및 사진 전시회)	<input type="radio"/>
4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 (자서전 쓰고,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 실시)	<input type="radio"/>
5		만들고, 나누고! ( 다양한 공예수업 운영 )	<input type="radio"/>
6		함께하는 어깨동무 (주민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	<input type="radio"/>
7		내 손안에 들어온 세상2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법 배우기)	<input type="radio"/>
8		정리수납과정 교육 (정리수납교육 자격증 취득 및 봉사)	<input type="radio"/>

	분야	2022년 역촌동 (洞) 특성화 사업	기표란 (●)채움
역촌동 필수 사업	(구)참	찾아가는 노노케어 [ 5천만원 ] - 건강한 노인들이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시)참	우리동네 배움터 사랑방 [ 2천만원 ] - '토정골사랑방'과 '모두의 공간'을 자치회관 배움터로 활용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주민세 균등분	마을의제개발 - 2022년 주민총회운영 등 마을자치계획 선정 활동사업 - 2023년 역촌동에 필요한 마을의제 발굴에 필요한 워크숍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  |  |
|--|--|
| * 귀하는 위 주민총회 상정된 자치계획 사업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업 실행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 * 개인 정보 동의 : 주민총회 정족수 확인용 및 총회결과 발송용으로 사용 (개인정보 동의는 자료 확인 후 3개월이내 폐기함)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절 취 신)

[아래 양식에 하나라도 기입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 처리함]

이름		성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휴대폰 번호	010 - - - - - (※ 휴대폰 번호 ; 번호가 틀릴 경우 투표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역촌동 거주 <input type="radio"/> 직장 <input type="radio"/> 지역단체소속(생활) <input type="radio"/> 15세~19세 <input type="radio"/> 20대 <input type="radio"/> 30대 <input type="radio"/> 40대 <input type="radio"/> 50대 <input type="radio"/> 60대 <input type="radio"/> 70대 이상 <input type="radio"/>		
※ 2021년 5월 말 역촌동 45,987명 인구 기준, 230명(0.5%) 이상의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사업선정. ※ 최종결과발표: 7월15일(목) 오전11시 유튜브 방송 ( SNS문자발송 ), 역촌동 게시판 홍보. ※ 세부계획 작성시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통해 예산 조율 가능. ※ 개인정보는 주민총회 정족수 확인용 및 총회 결과 발송용으로 사용 후 3개월 이내 폐기함.			



## 2021년 역촌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제2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범동으로 역촌동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이 주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을 사전투표를 통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선정결과를 공유하여, 2022년에 역촌동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실행함을 목적으로 「제3회 역촌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주민총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2조에 따라 『제3회 역촌동 주민총회』를 개최함.
- 일 시 : 2021. 7. 15.(목) 11:00
- 장소/방법 : 역촌동 주민센터 2층 제2강좌실 / 온라인(유튜브)
- 보고 안건
  - 2021년 역촌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보고
  - 2021년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 감사보고
  - 2021년 역촌동 주민자치회 12개 실행사업 진행상황보고
- 승인 안건
  - 2022년 은평구 역촌동 자치계획 의결
    - 주민세 개인균등분 환원사업 승인
    - 서울시 동(洞)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승인
    -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지역사업 승인
  - ※ 의결 정족수는 2021년 5월 31일 기준 역촌동 인구 0.5% (약 230명) 이상

### 2. 주민총회 투표 자격

- 역촌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직장·단체·기관에서 활동하는 만15세 이상 주민

### 3. 사전투표

- 기 간 : 2021. 6. 24.(목) ~ 2021. 7. 5.(월) 18시까지 마감
- 방 법 : 홍보자료 및 투표용지 배부
- 거점투표 : 역촌동 주민센터, 역촌역, 응암역, 구산역 인근 지역 현장투표소 4개 운영

### 4. 결과보고

- 주민총회 개최결과 : 한 달 이내 은평구청 및 동 게시판에 보고 및 사전투표자 문자발송

### 5. 기타사항

- 위 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나, 주민총회 후 서울특별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이 필요할 시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조정·결정합니다.

### 6. 문의사항

- 역촌동 주민자치회(☎02-389-4035) / 역촌동 주민센터(☎02-351-5304)

2021년 6월 8일  
역촌동 주민자치회장

## 사전투표 결과

### ▣ 투표대상 : 역촌동 주민(만15세 이상)

※ 5월 말 기준 역촌동 45,987명 전체 인구 0.5%(230명) 이상

### ▣ 투표기간 : 2021. 6. 24.(목) ~ 7. 5.(월) /12일

### ▣ 투표방법 : OMR 투표용지 배부를 통한 거점 현장투표

- 동주민센터, 역촌역, 응암역, 구산역 인근
- 인근 지역 홍보 및 투표

### ▣ 선정방법

- 1인당 : (비)프로그램성 사업 2개·프로그램성 사업 4개 등 총 6개 의제 선호도 투표
- ※ 동 필수 사업 동의 유무로 결정

### ▣ 투표개표방식 : 7월 6일 주민센터 2층 개표 및 영상촬영

### ▣ 투표개표 참관인 : 8명(주민자치위원)

- 김인순, 김정란, 김명화, 김태희, 윤경학, 이양수, 오수복, 장여선

### ▣ 투표참여 인원 : 1,165명(2.53%)로 정족수 이상 성원

- 무효표 52표 / 유효표 1,113표



## 2022 역촌동 주민제안 마을의제선정 사전투표결과

주민제 활동사업 약 **8,016만 원**, (시)참여예산 **2,000만 원**, (동)참여예산 **5,000만 원**  
**총 투표자 : 1,165명(2.53%) / 유효표 : 1,113표 / 무효표 : 52표**

연번	주민제 균등분	2022년 역촌동 마을사업	투표결과
1	(비) 프로그램 사업	1. 깨끗한 역촌! 우리가 만들어가요!! (쓰레기 정거장, 내 집앞 골목청소의 날, 봉산가꾸기, 미세먼지 안녕)	1위: 911표(78.2%) <b>선정</b> [예산: 1,700만원]
2		2. 전통장 우리손으로 만들기 및 김장김치 나눔	2위: 718표(61.6%) <b>선정</b> [예산: 800만원]
3	선호도 2개 선택	3. 언제나 청춘, 이미용 봉사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이미용 봉사)	3위: 505표(43.3%) <b>탈락</b>
1	프로그램 사업  선호도 4개 선택	1. 나도 할수 있다! (바리스타, 제빵교 )	1위: 757표(65%) <b>선정</b> [예산: 900만원]
2		2. 정리수납과정 교육 (정리수납교육 자격증 취득 및 봉사)	2위: 639표(54.9%) <b>선정</b> [예산: 850만원]
3		3. 함께하는 어깨동무 (주민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3위: 617표(53%) <b>선정</b> [예산: 800만원]
4		4. 만들고, 나누고! (다양한 공예수업 운영)	4위: 569표(48.8%) <b>선정</b> [예산: 750만원]
5		5. 건강한 밥상 프로젝트 (사찰음식 만들고 나눔)	5위: 540표(46.4%) <b>선정</b> [예산: 700만원]
6		6. 내 손안에 들어온 세상2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법 배우기)	6위: 507표(43.5%) <b>탈락</b>
7		7. 역촌동 이웃과 추억만들기 사진전 (사진기술 익히기 및 사진 전시회)	7위: 352표(30.2%) <b>탈락</b>
8		8.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 (자서전 쓰고,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 실시)	8위: 293표(25.2%) <b>탈락</b>

역촌동 필수 사업	분야	2022년 역촌동 (洞) 특성화 사업	기표란 (●) 채용
	(구)참	찾아가는 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대상 반찬나눔 사업)	동의 : 1,085명 (93.1%) <b>선정</b> [예산: 5,000만원]
	(시)참	우리동네 배움터 사랑방 ( '토정골사랑방'과 '모두의 공간'을 자치회관 배움터로 활용)	동의 : 1,041명 [89.4%] <b>선정</b> [예산: 2,000만원]
	주민제 균등분	마을의제개발 - 2022년 주민총회운영 등 마을자치계획 선정 활동사업 - 2023년 역촌동에 필요한 마을의제 발굴에 필요한 워크숍	동의 : 1,035명 (88.8%) <b>선정</b> [예산: 약1,516만원]

성 별	남자 : 433명 / 여자 : 732명
소 속	• 역촌동 거주 : 958명    • 직장 : 134명    • 지역단체소속(생활) : 73명
연령대	• 15세~19세 : 41명    • 20대 : 95명    • 30대 : 103명    • 40대 : 178명 • 50대 : 218명    • 60대 : 249명    • 70대 이상 : 281명

## 주민총회 선정사업

### ■ (시)참여예산 : 7/22(목) 제출

- ▶ 우리동네 배움터 사랑방 : **2,000**만 원
  - 토정골사랑방과 '모두의 공간'을 동네 배움터로 활용

### ■ (구)참여예산 : 8/6(금) 제출

- ▶ 찾아가는 노노케어 : **5,000**만 원
  - 건강한 어르신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반찬나눔 사업

### ■ 주민세균등분 활동사업 : 9/13(월) 제출

주민세균등분 총 예산 : 80,166,860원

- ▶ 1위 : 깨끗한 역촌!우리가 만들어가요!! (쓰레기정거장, 내집앞 청소 등) **1,700**만 원
- ▶ 2위 : 전통장 우리손으로 만들기 및 김장김치 나눔 **800**만 원
- ▶ 1위(프) : 나도 할 수 있다!! (바리스타, 제빵 교실) **900**만 원
- ▶ 2위(프) : 정리수납과정 교육 (정리수납교육 자격증 취득 및 봉사) **850**만 원
- ▶ 3위(프) : 함께하는 어깨동무! (주민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800**만 원
- ▶ 4위(프) : 만들고, 나누고!! (다양한 공예수업 운영) **750**만 원
- ▶ 5위(프) : 건강한 밥상 프로젝트 (사찰음식 만들고 나눔) **700**만 원
- ▶ 마을의제개발비(프) : 2022년 주민총회 운영비 **1,526**만 원

## 주민 총회

■ 일 시 : 2021. 7. 15.(목) 오전 11:00

■ 개최방법 : 사전녹화 및 영상 유튜브 업로드

■ 참여대상 : 역촌동 주민 누구나

■ 참여방법 : 역촌동 주민자치회 유튜브 링크 사전투표자 문자발송 및  
주민총회 카카오톡 홍보

■ 주요내용 : 마을의제 설명 및 투표결과 발표

■ 영상편집 :

- 2021. 7. 14~15 : 사전영상 녹화편집 확인
- 2021. 7. 15(목) 11:00 : 온라인 주민총회 영상 공개

## 행정 사항

### 동 주민센터

- 사전투표 현장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홍보
- 사전투표함 적정 장소에 보관 및 투표집계 엑셀정리작업 협조
- 주민총회 영상촬영 지원
- 주민총회 전반적인 세부진행계획 민관협력 지원

## 총회 평가

### 잘된 점: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유튜브 온라인 주민총회를 기획하면서, 총회준비 과정을 영상에 남겨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기획한 의도대로 잘 진행되었음.
- 기존의 총회 진행 형식을 탈피해서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주민들의 반응과 인터뷰 등으로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주민자치위원 60명이 모든 주민총회 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적극적이고 단합된 모습을 보아서 좋았음.
- 민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유지되어 총회준비가 잘 되었음.

### 아쉬운 점: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마을의제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싶었으나, 마을의제 발굴 기간도 짧았고, 그 내용적인 면이 기존의 프로그램과 많이 다르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고,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마을의제를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함.
- 유튜브 방송을 위한 영상편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추후에 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사전 영상편집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함.
- 마을의제를 숙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한 대면 총회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쉬움.
- 아직까지 총회를 인식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서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음.
-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아쉬움.

2021  
역촌동  
주민총회  
사진







2021  
역촌동 주민자치회  
활동  
소감



## 우리의 지난 1년은...

주민자치 1년을 보내면서 코로나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화상교육을 통해서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맞이 했던 한해였네요.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경험이 내 인생에 좋은 영향분을 많이 받았습니 다 .

또 다른 내년을 기대하면서~~^^

역촌동 주민자치회 파이팅입니다. ~~^^

- 강정순 위원

무엇을 하면 우리가 사는 역촌동을 위해 가벼운 상자를 조금이라도 더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우리는 비장하기까지 했다. 빼곡히 쓰여있는 어르신들의 주소와 연락처들. 어떻게 선별해야 할까를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공평할까 연구했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헤드릴까를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우선 위원 한 사람당, 활동가 3명을 모집하여, 어르신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일이 결정되었을 땐, 난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까지 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못하는 나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다른 위원분들은 활동가를 다 정했다는데 멍하니 뉘 놓고 있는 난, 머리가 어지럽기까지 했고 그만 둘까 생각도 했을 즈음, 친한 위원님 왈, 주변을 우선 둘러보라고 힌트를 주었다.

사회복지사를 하고과 전공을 바꿔 주경야독으로 틈틈이 공부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실습을 못 나가 졸업을 못하고 있는 아들에게 실습한다 생각하고 틈

틈히 어르신께 안부전화해 볼 것을 권했을 때 아들은 흔쾌히 따라주었고, 용기가 나기 시작한 난 후배에게 활동가를 권했고 한의원에 근무하는 후배는 친구와 함께 하겠다고 하며 오히려 내게 고마워했다.

난 활동가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들의 이야기 주제는 늘 ‘어르신’이었다. 일주일에 한번 안부전화를 하는데도, 불편해하시는 분이 더러 있으시다고 한다. 아침에 아들이 미처 전화를 못 한 어르신은, 나라도 전화해 보면, 고맙다고 하시며, “자식도 안 하는 전화를 해준다”라고, 세상이 그래도 참 살만하시다고 한다.

반면 모 어르신의 자녀분이 전화를 해서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는, 다음 어르신께 전화할 엄두가 나지 않기도 했다.

사랑의 김 나눔 행사 때, 얼굴에 웃음 한가득 담고 오셔서, 감사와 고마움을 한껏 주고 가신 어르신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눈물이 핑 돌았다.

‘아하~ 이 맛에 봉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야.’ 봉사과 사랑을 나눠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맛을 모를 것이다.

사실 난 많이 아프다. 2년 전부터 3개월마다 병원을 찾아 한 보따리나 되는 약을 타가지고 와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면, 때론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아직 할 일이 많은지 우리 분과 위원들과 활동가들이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카페에서 만나 차도 한 잔씩 하며 어르신들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고 “언니가 전화 한번 해봐” 하며 투정 아닌 투정도 부



려 끝내 내뿜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나  
에 미래 얼굴이요 모습이다.

안부전화를 하다 보니, 언니도 생겼다. 그분은 혼  
자 사시고 아직도 일을 하신다며 목소리에 행복과  
즐거움이 한껏 묻어 나온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꼭 뵙고 싶고, 맛난 식사 같이 하고프다.

난 이제 만날 사람도 많고,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  
으며, 내일도 열심히 불광천을 달릴 것이다.

- 권성연 위원

코로나 시국에도 저희 분과는 즐겁고 유익하게  
활동했습니다.

때로는 시간에 쫓기기도 했지만 나름 보람도 느  
끼고 감사했습니다~~.

- 김명화 위원

내 손안에 들어온 세상!!!

올 한 해 저를 힘들게도 하고 기쁘게도 했던 이  
름입니다.

내 개인의 일이 아니었기에 사업에 무한 책임감  
이 느껴졌고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  
었습니다.

사업의 방향이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의미도  
많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서툴기만 한 분과장을 묵묵히 도와가며 힘을  
모아주시고 애써 주신 분과 위원님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셨고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역촌의 주민들께서 멋진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의 마지막을 마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지만 조금이라도 IT 시대에 소외되고 어  
려움을 느끼셨던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  
었음에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스마트 환경을 접하고 기뻐하시던 어르  
신들의 모습에 저 역시 힘을 얻었고 주민자치회  
를 통해 한 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는 멋진 역촌의 주민자

치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  
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 김미정 위원

“우리 손으로 배우고! 만들고! 나누고!” 분과 리  
더 김윤진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수고해 주신 위  
원님들과 분과원들께 감사합니다.

배우고 만들어서 나눔으로 연결할 수 있어 뜻  
깊고 보람된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제과제빵 배우기에서 머핀을  
만들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함으로써 더불어 함  
께하는 좋은 기회를 주신 주민자치회에 감사 감  
사~~ 화이팅입니다.

- 김윤진 위원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으로 활동을 자  
주 할 수 없었지만 된장·간장 나눔, 김장김치 나  
눔, 유자청 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  
이라고 생각했고, 고생한 만큼 어르신들께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주민자치 위원님들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 김은숙 위원

내년도에는 22년 우리 역촌 주민이 모두 다함께  
배우고, 즐기고, 참여하는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김인순 위원

2021년,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시  
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웠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  
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란 위원

코로나로 인해 각 분과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위원님들 얼굴을 뵙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코로나 빨리 물리치고 우리 함께 예쁘고 행복한 마을로 가꿉시다.

- 김태숙 위원

코로나로 만나기 어려운 시기에 “내 손안의 세상”의 줌수업 강의는 휴대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더욱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김태자 위원

올 한 해를 뒤돌아 보며...!!

1. 전통 장은 시기와 기후에 민감하여 장 담기, 가르기, 달이기 등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잘 숙성된 건강에 유익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전달하였습니다

2.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을 전달하였습니다.

3. 유자청은 직접 담아서 전달합니다.

올해는 3가지 사업으로 지역에 독거어르신과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분과 위원님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이 사업은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장 발효의 끝판왕 리더

- 마천숙 위원

도저히 앞의 일을 생각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맞이했던 2021년. 그래도 역촌동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꿈을 품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새로워질 역촌동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기꺼이 수고로움을 같이 하는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장님과 임원들, 동장님을 비롯한 지원관, 직원분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린 코로나로 잠시 멈출지는 몰라도, 결코 주저앉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역촌동 주민자치회 파이팅~~^^

- 박상현 위원

2021년은 나름 바쁘게 혹~지난 것 같네요.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1+1=무한한 사랑.

나만이 아닌 모두 함께를 배웠고 주민자치회에서 한발짝 나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모두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 백승자 위원

오지 않을 것만 같은 2021년의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촌동을 아끼시는 주민자치회장님, 임원분들, 위원분들, 그리고 역촌동 주민센터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는지 잠깐의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숨 돌리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소통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함이 듭니다.

올 한 해의 부족함과 아쉬움은 다가오는 새해에 행복한 만남을 기대해보며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활기찬 역촌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 손지영 위원

자치위원으로 분과 활동을 했는데 분과 사업인 ‘우리 동네 이웃 장터’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취소가 되어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매달 회의하고 모이며 동네에 아는 분들

이 생겨서 좋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동네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동네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세이노히토미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 여러 활동을 재미있게 하고 끝마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발전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오수복 위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며 시작한 주민자치 위원 첫해였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계획했던 사업을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여러 위원님, 주민분들과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 같이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 오흥덕 위원

마을이 달라지면, 나라도 달라집니다.

- 윤경학 위원

코로나로 힘든 한 해였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마음 좋은 인연이 되어준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덕력 위원

코로나에 따른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나름 장터 탐장님, 동료분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한 해를 보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함께 해요~

- 이진용 위원

지원관님, 간사님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원님들 대면 한 번 못하고 zoom을 통해 화면으로만 뵈어 참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서로 얼굴 마주 보며 화기에애한 회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형자 위원

역촌동 노인인구 8,000명 중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안부전화를 했다. 주기적으로 활동가들이 전화해서 안부인사, 말벗, 생활상담, 정서 지원을 했다. 3일 동안 전화해도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불안한 마음으로 직접 방문을 하곤 했다. 우리 복지분과 위원들은 매주 안부 전화 활동가들의 활동일지 공유해서 어르신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과 연계하여 민관협치로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주민자치 분과 위원들과 분과원들은 안부전화 활동가를 할 수 없다 해서 아쉬웠다. 주 1~3회, 월 8만 원 봉사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역촌동 주민만 된다고 해서 활동가 모집 단계에서 힘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안부전화 활동가 15명을 모집해서 150여 분의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드리는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을 할 수 없는 시국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독거어르신들께서 안부 전화 초기에는 “허리가 아프다”, “관절이 쭉신다”, “고혈압과 당뇨 등 여러 질병으로 매일 약을 한 줍씩 먹는다”,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외롭다”, “살기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그런데 요즘 안부 전화하면 반갑게 받으시며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안부 전화해줘서 고마워. 차 대접하고 싶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혼자지만 괜찮아’ 사업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뿌듯하고 몽클하다.

매주 여러 사건이 있었다. 지난 8월에 김00 어르신 댁에 화재가 난 일도 있다. 위급 상황이라 주민센터 주임께 연락을 드려 복지 행정팀에 연계해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어르신은 도배 리모델링

할 동안 쉴 곳을 마련하고 각종 양념세트 선물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더 바라는 것은 전기요금, 가스비, 수도요금 등을 감면해 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도 차상위 계층도 아니어서 복지 혜택이 없다 하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어르신이다.

문00 어르신은 추석 때부터 밥을 못 먹어 기운 없어 죽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신다. 우선 돌봄 서비스를 연락드렸는데 무료 돌봄 서비스면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라고 연락이 와서 방문해 000신청서를 쓰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소득층 및 수급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은 지원이 없다.

‘혼자지만 괜찮아’의 지속적인 안부활동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 있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 이유는 ‘복지 대상자가 복지제도 자체를 몰라서’(46.2%)가 첫 번째 이유였으며 이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22.0%),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5%) 등의 순이었다.

9월 9일 사랑의 김 나눔 행사를 했다. 추석 전에 어르신들께 김 한 박스씩 나눠 드렸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배달도 해드렸다. 어르신들은 김을 가져가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많이 행복해하셨습니다.

11월 4일 튼튼 건강 꾸러미 나눔 행사도 했다. 건강 마스크, 참치 통조림, 식용유 등의 선물 세트를 드렸다. 우리의 작은 정성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좋아하시니까 더불어 나도 행복했다.

6개월 동안 여러 일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우리 복지분과는 사업을 잘했다고 나를 생각한다. 나의 바람은 올해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안부전화는 주기적으로 지속되면 한다. 독거 어르신들께서 지역 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혼자지만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 장여성 위원

역~ 역시나~ 최고야  
촌~ 촌장님 리더력 최고  
동~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네  
주~ 주권의 진정한  
민~ 민주주의 실현  
자~ 자기 스스로 찾고 실현하는 곳  
치~ 치유가 돼요~ 자아실현  
회~ 회의라면~  
역촌동 주민자치회가 당근 최고지요!!

- 전혜정 위원

주민자치회가 제게는 조금의 낯설과 약간의 설레임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촌동에 거주하면서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밖이었지요. 그러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웃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뵈 수 있고 어르신들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분과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무척이나 어려운 일 들이었겠지요.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준 분과원들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람을 만났다는 게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살면서 사람만큼 소중한 재산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동네를 알았고, 이웃을 알았으며 좋은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숙 위원



내년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마스크 안 쓴 얼굴을 뵈 수 있기를~

주민자치 위원님들 코로나 상황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 정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주민자치 활동을 한 지 1년을 보내고 나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찬 일이 더 많았던 거 같아요.

전 주민자치회에 들어와 인생공부, 인성에 대한 영양분을 더 많이 받고 배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내년엔 주민자치가 많은 기대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게 주민자치 파이팅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뵈길 기원합니다.

#### - 주희연 위원

매주 마을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사업을 하며 가끔은 긴장할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찬 일이 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함께하니 참 좋은 2021년이었습니다.

역촌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 - 천경순 위원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분과 리더를 맡았던 홍상만입니다.

벌써 주민자치위원으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촌동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안을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꽤나 큰 꿈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렇듯 코로나라는 처음 마주하는 벽을 끝내는 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큰 202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어떤 통계를 뒤져봐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낙후된 지역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계획된 사업이자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진행했지만 아쉬움을 조금 남긴 채 마치게 됨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결승선까지는 못 왔지만 다음 발걸음은 더 쉬울 거라고 저 스스로와 아직 청년 당사자인 분과 위원님들에게 위로해 봅니다.

하루하루 내일을 계획한다는 것이 무색한 시절입니다. 내일의 우리는 또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위기도 우린 꼭 이겨냈다는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증명합니다.

저와 청소년·청년분과 자치위원들은 그 내일을 위해 더 고민하고 더 준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역촌동의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동네 역촌동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호랑이의 기운이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지역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 - 홍상만 위원

2020년 계획되었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결국 올해 사업으로 이월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엄청난 사업비와 함께 맡겨진 리더라는 중책에 올해는 반드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이전 사업 계획으로는 진행이 불가하여 분과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회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거리두기 강화 등에도 수행 가능한 3가지의 사업으로 변경을 하여 별 탈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문화 이웃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 증명서를 요구해야 할 때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피로감이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한 사람의 역촌동 주민으로서 작

은 힘이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먼저 용기 내어 다가가면 언제든지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만으로도 삶에 큰 버팀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동장님과 자치회 사무실의 회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리더를 믿고 함께 이끌어주신 분과 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오신 다문화 이웃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하고 파이팅 하는 역촌동 주민자치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 홍청자 위원**

2021년도 코로나에도 많은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활기찬 주민자치회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신경숙 부회장**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니 코로나란 놈 때문에 위원님들의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일 년을 보낸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중에도 사업을 열심히 하신 위원님들을 볼 때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는 항상 즐겁고 미래는 항상 기대로 가득하죠? 내년도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모두 노력해서 더도 말고 올해보다 조금만 더 살기 좋은 역촌을 만들었으면 해요.

**- 이효미 간사**

역촌동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열심히 해주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 덕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든 사업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역촌동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마음, 책임감, 봉사심 등 참여율 또한 너무 높아서 제가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2022년에도 더 발전적인 역촌동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민관이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재은 동자치지원관**





2021  
역촌동 주민자치회  
별첨자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3.09.26 조례 제962호  
(전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9.07.18 조례 제1275호  
(일부개정) 2020.07.09 조례 제1351호  
(전부개정) 2021.12.09 조례 제1480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 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〇〇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회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회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 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 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천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회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 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의 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⑥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제6장 자치회관

**제23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 ⑥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 제8장 보 칙

**제37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전부개정으로 이전 부칙 삭제 -----

## 부 칙 <제1480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4조(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협의회로 본다.

**제5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3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별첨2]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19. 03. 07. 초안검토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19. 03. 11. 사무국 회의	초안 검토 및 의견수렴
2019. 03. 18. 사무국 회의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
2019. 03. 20. 사무국 회의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
2019. 03. 26. 정기회의	운영세칙 안건상정 의결
2021. 03. 17. 운영회의	역촌동 2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 1차 회의
2021. 04. 05. 운영회의	역촌동 2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 2차 회의
2021. 04. 13. 임원회의	임원회의 운영세칙 3차 수정
2021. 04. 15. ~ 16.	전체 단톡 공람
2021. 04. 20.	4차 수정안 - 전체 단톡을 통해 수정변경사항 의결( 60명 중 54명 안건동의) - 회비 : 전체 위원 무기명 투표로 찬반결정 - 47명 투표함여 / 19명 찬성 ① 5,000원 결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동지역사회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역촌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역촌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세칙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위원을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주민자치회 회장, 부회장, 간사, 각 분과 분과위원장(또는 사업리더), 동자치지원관을 말한다.
7. “고문”이란 역촌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역촌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역촌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역촌동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모든 활동
  3. 지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의 요청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업무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7. 자치회관의 운영

## 제2장 주민자치회

**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대표조직이다.

**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과 선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이하 “조례”라고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하되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연 1회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타 직능단체 겸임을 3개이내로 제한한다. 직능단체의 범위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결정 사항 보고 및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 결정 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은 운영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 자격, 임기, 대우 및 선출방법 등은 “조례 제8조”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나.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다.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2.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 다.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 라. 다른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
  - 마.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은 6년의 임기 완료시, 2년뒤 다시 신규위원의 과정을 거쳐서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기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3조(위원의 사임)** 임원, 자치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자치회장에게 사임서 제출 일일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의할 수 있다.

1. 은평구 조례 제11조 (위원의 의무)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또는, 사업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단, 회장, 부회장, 간사는 분과원으로 소속하되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라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시 분과활동 참여가 어려울수 있다.)
4. 자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시켜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6.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

을 남용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절차는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회장에게)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2.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
3. 감사 2명(사업감사 1명, 회계감사 1명).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이외에 임원이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일반 민주주의의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투표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진행한다.

**제16조(임원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단, 재선거의 경우는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단일 후보의 경우 찬반투표로 과반수 이상 득표시 선출한다.

**제17조(임원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또한, 사업회의는 사업리더가 의장이 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

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록으로 보고하며,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전반을 수행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14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1. 임원회의와 분과회의에 각 연 6회 또는 연속 3회 불참할 경우
  2. 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 ②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임시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궐위와 후임선출)** ① 자치회장 등 임원 궐위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3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단, 임기 6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 자치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3. 감사 궐위 시 감사는 2인으로 구성됨으로, 남은 1명이 대신한다.

4. 분과위원장(또는, 사업리더) 궐위 시 30일 이내에 분과 내에서 후임자를 선출하고,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무·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임시회의
4. 임원회의
5. 운영진회의
6. 분과회의 (사업별 구성시 사업회의)
7. 민관협력회의

②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종류 후 별도의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을 확인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③ 회의의 진행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1.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2.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하여야 한다.
5. 분과위원회의 회의(또는 사업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역촌동 고문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문과 지원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⑤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또는 사업리더)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 작성시에는 간사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내 외부 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④ 주민총회는 개최 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주민의 0.5% 이상(사전투표자 포함) 참석으로 한다.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만 1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단, 역촌동 소재의 사업자, 단체 소속 등 생활 주민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다.

1.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2. 주민총회준비위원장은 주민자치회장으로 한다.
3.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의 의결로 주민총회준비위원장 명의로 소집한다.
4.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사전투표자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의 의결로 자치회장 명의로 소집하며 연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3번째 화요일에 개최하며, 조례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위촉 해제 요구
5. 분과회의(또는, 사업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임원회의 및 운영회의, 분과회의에서 부여된 사항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에서 개최를 요구할 때
3. 동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외 기재하여 자치회장에게 서면으로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

**제24조(임원회의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임원회의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장, 부회장, 간사, 동자치지원관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의는 매월 운영진회의 개최 전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주민자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하여 운영진회의 및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운영진회의 및 정기회의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여된 사항
3.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4.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운영진회의의 구성)**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② 운영진회의의 구성은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각 분과위원장(사업리더)로 한다.

(간사 및 동자치지원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 협조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 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 조정 및 협의

⑤ 운영진회의는 운영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분과회의 또는 사업회의)** ① 주민자치회의의 활동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회의를 구성한다.

②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수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자치회관 운영 분과는 필수로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의 총무를 지명한다.

⑤ 각 분과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해당 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업무
2. 행정사무 위·수탁 발굴업무
3. 마을 공동사업 수행업무

⑥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분과원을 정원으로 매월 정기회 이전에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회 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인 분과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⑦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⑧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원의 경우 정기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7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고문, 간사, 동자치지원관으로 구성되고,

필요시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직능단체 등 협력기관도 참석할 수 있다.

③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수시로 개최한다.

**제28조(주민설명회 및 성과공유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②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설명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성과공유회는 매년 12월 정기회의와 함께 당해년의 주민자치회 사업 정리 및 평가하며, 차년도 사업안 내를 위해 진행한다.

**제29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에서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 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변경(제정·개정·폐지)
2. 임원 해임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요구
3.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4. 법령위반 사항 및 의결 실행 불가 사유 발생 시 재의결
5. 임원의 위촉 및 해임

④ 위원이 정기회의 참석이 불가할 시 위임장을 제출하면 정족수로 인정하고, 투표시 다수 의견을 따른다. 단,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위임은 연 2회로 횟수를 제한하며, 위임받은 자는 1인 초과 위임은 불가하다.

**제30조(사업계획 수립)** ① 임원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②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③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계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 한다.
- ④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운영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자치회관 운영 원칙)**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내지 제 14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33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촉증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4. 문서접수 대장
  5. 문서등록 대장
  6. 각종 회계장부
  7. 사업계획서
  8. 분과회의 회의록 (또는 사업회의 사업회의록)
  9.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4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기록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사무의 인계)** ①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원, 자치위원 및 분과원의 임기 만료, 사임 및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의 진행 사항과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고 인수인계서와 함께 후임자 또는 해당 업무 대행위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단, 추진 중인 업무가 없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등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수인계 시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사무인계)를 준용하되,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사임, 해임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3장 재정 및 예산 관리

**제37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는 주민에게 공개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8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제39조(특별회비)** ① 주민자치회의 특별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2. 특별회비는 정기회의시 의결로 징수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 회비는 매월 5,000원으로 한다.
    - 가. 회비사용은 선 의결·후 지출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선 지출도 가능하다.)
    - 나. 회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간사가 관리하되,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는 상·하반기 감사결과로 대체하고, 해당 결과는 그달 정기회의때 보고한다.

- ② 회장은 주민총회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비는 간사가 매월 정기회의시 수입, 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제41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4장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정의)** 주민자치회는 위원중에서 자치회장, 자

치부회장,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출관리를 위해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3조(인원수 및 겸직제한)**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중 공개모집을 통해 5인~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4조(절차규정)**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임원선출 관리를 위해 선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해산)**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승인 의결을 거쳐서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기타)**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단위	대 상	기준금액	비 고
사용료	1시간	50㎡미만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는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매 30분 초과시 50%를 가산한다.</li> </ul>
		50㎡이상~100㎡미만	7,500원	
		100㎡이상~150㎡미만	10,000원	
		150㎡이상~200㎡미만	12,500원	
		200㎡이상	15,000원	
수강료	월	10시간이하 프로그램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li> <li>• 1인 1프로그램</li> <li>• 하한금액은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li> </ul>
		20시간이하 프로그램	15,000원	
		30시간이하 프로그램	25,000원	
		30시간초과 프로그램	35,000원	
체 력 단련실	1인/월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 동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동안은 수강료로 징수</li> <li>-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는 동안은 사용료로 징수</li> <li>- 하한금액은 운동기구 및 부대시설, 시설노후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li> </ul> </li> </ul>

[별표 2]

## &lt;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gt;

구 분	대 상	감면비율	비 고
사용료 및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li> <li>「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li> <li>등록장애인</li> <li>국가·공공기관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회의</li> <li>「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li> </ul>	100 퍼센트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개 이하 프로그램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의 저소득자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li> <li>65세 이상 또는 만18세 이하인 사람</li> </ul>	50 퍼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자</li> </ul>	20 퍼센트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li> <li>국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li> </ul>	50 퍼센트	

[별표 3]

## &lt;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gt;

구 분	반 환 내 용	비 고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강료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li> </ul>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전액 반환</li> <li>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시일 이전 : 전액 반환</li> <li>- 개시일 이후 : 일할계산하여 반환</li> </ul> </li> </ul>	

2021년도 역촌동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역촌동 주민자치회**

발행인 신재교

주 소 서울 은평구 연서로 59 (역촌동) 주민자치회관 3층

연락처 02-351-5302

---

